

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3] <개정 2024. 5. 20.>

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
(제75조제1항관련)

화학소방자동차의 구 분	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
포 수 용 액 방 사 차	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,000 L 이상일 것
	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
	10만 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
분 말 방 사 차	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
	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
	1,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
할 로 젠 화 합 물 방 사 차	할로젠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
	할로젠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
	1,000kg 이상의 할로젠화합물을 비치할 것
이산화탄소 방사차	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
	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
	3,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
제 독 차	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